

勞 動 經 濟 論 集
第38卷 第3號, 2015. 9, pp.97~130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행동에 미친 영향: 관대한 교육방법의 효과*

정희진** · 강창희***

본 논문은 2010년부터 일부 광역시도(경기도, 서울시, 광주시, 전북)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인권조례에 학내 체벌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보다 일반적으로는 관대한 교육방법의 효과를 추정한다.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추정결과에 따르면, 인권조례는 바람직한 행동 경향,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전반적인 만족도로 표현되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체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에, 인권조례는 학생들의 문제 행동으로부터의 피해 경험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 이와 같은 영향은 주로 중하위권 학생들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는 인권조례의 시행이 일부 학생들,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의 문제 행동 경향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학생인권조례, 교육방법, 이중차분법

논문 접수일: 2015년 7월 29일, 논문 수정일: 2015년 9월 18일, 논문 게재확정일: 2015년 9월 21일

* 본고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두 분의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은 교신저자의 지도하에 작성된 정희진의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 논문(정희진, 2015)을 수정·보완하여 집필되었습니다. 본 논문은 2013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제1 저자)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석사 (cau1017hj@gmail.com)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ckang@cau.ac.kr)

I. 서론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을 훈육할 목적으로 가하는 체벌은 교육적으로 정당한 수단인가? 그것이 정당한 수단이라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학교 내에서 체벌을 허용해야 하는가? 보다 근본적인 질문으로서 체벌을 통한 교육방법은 이론적으로 정당한 수단이며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제로 효과적인가?

이런 질문들은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교육방법이 무엇일지를 심사숙고하는 학부모나 선생님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던지는 질문이다. 학내 체벌의 허용 여부에 관한 논쟁은 선의를 가진 교육자들이 최선의 교육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이 논쟁은 비단 교육 현장의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인 듯이 보인다. 지난 2010년 발표된 서울시 교육청의 초중고교 내 체벌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 그리고 2012년 10월에 시행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일련의 사회적 논쟁과 법률적 공방을 볼 때, 학내 체벌은 단지 교육방법 이상의 사회적 함의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학내 체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체벌을 통해 학생들의 일탈 행동을 제어할 수 있고, 일탈 학생을 제재하는 다른 수단들(예를 들어, 정학이나 퇴학)에 비해 체벌이 더 교육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체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체벌이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체벌은 아이들의 인권에 반하는 육체적인 폭력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상반되는 두 이론적 견해가 존재할 때, 실증분석자가 취하는 일반적인 입장은 이들 두 효과 중에서 종국적으로 어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가를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는 것이다. 이론적 논쟁은 대개 그 자체로는 잘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적인 목적의 체벌은 보통 두 가지의 형태를 띤다. 첫째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가하는 체벌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에게 적용하는 체벌이다. 부모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자녀에게 가하는 부모 체벌의 효과를 다룬 학술적인 실증분석 연구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최근의 연구는 메타분석 방법을 이용해 이들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고 있다. 부모 체벌의 효과를 정리한 메타 연구들은 대체로 체벌의 효과에 대해 일관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Gershoff(2002, 2010)은 부모의 체벌이 아이에게 장기적으로 상당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으로, Larzelere and Kuhn(2005), Ferguson(2013), Paolucci and Violato(2004)는 지속관찰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체벌의 인과효과는 Gershoff(2002, 2010)가 주장하는 정도만큼 크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학부모 체벌의 실증적인 인과효과에 관해 이와 같이 상이한 견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학부모 체벌에 내재되어 있는 내생성 때문이다. 학부모의 체벌을 자녀에게 무작위로 배정하고 그것의 장기적인 효과를 관측하는 실험(또는 자연실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부모 체벌의 효과에 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추측된다.

부모 체벌의 영향을 다룬 실증분석들이 상당히 많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학내 체벌의 교육적 효과를 다룬 학술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드물다. 그리고 그것의 효과에 대해서도 일관된 결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Gershoff et al.(2015)은 학내 체벌이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는 반면, Babcock(2009)는 학내 체벌을 포함한 엄격한 학교 내 규율이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다.

이와 같이 학내 체벌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실증분석 결과가 거의 전무한 상황을 생각할 때, 어느 사회에서나 학내 체벌의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격렬하게 일어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학내 체벌에 관한 현재의 논쟁은 서로의 상반되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논쟁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내 체벌의 다양한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실증분석이 요구된다.

이런 배경을 생각할 때, 2010년부터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내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는 학내 체벌, 좀 더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관대한 교육법(indulgent teaching)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인과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 학내 체벌금지 조치는 서울시에서 2010년에 최초로 시행되었다. 그 이후에 경기도(2010년), 광주시(2012년), 전라북도(2013년)에서 각각 ‘학생인권조례(이하 인권조례)’를 채택하면서, 이들 지역에서도 조례 시행 이후 학내 체벌이 금지되고 있다. 이들 인권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학생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복장 및 두발 규제 금지, 소지품 검사 최소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본 연구에서 인권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학내 체벌금지 규정에 주목하고, 인권조례가 학생들의 행동에 미치는 인과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본래 인권조례는 학교 내의 부당한 대우와 불합리한 교칙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진단으로부터 출발하였다(조금주, 2007).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던 차별이 감정적·비교육적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다(오태열·강재태 2006)는 시각이 인권조례의 도입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실제 제정된 인권조례들에는 학내 차별금지 이외에도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 서울시의 차별금지 조치 시행과 그 이후 다른 지역들에서 인권조례의 도입이 진전된 상황을 통하여 판단할 때, 인권조례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학내 차별의 금지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인권조례가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을 활용하는 이중차분법 추정을 통하여, 인권조례의 도입(즉, 학내 차별금지)이 학생들의 행동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인권조례는 경기도에서는 2010년 10월부터, 광주시에서는 2012년 1월부터,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 1월부터 인권조례가 시행되었으나, 차별금지는 그 이전인 2010년 11월부터 적용되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인권조례와 차별금지의 시행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처치의 적용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분석 자료(「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2010~2013년 자료)의 관측 시점과 인권조례의 시행 시점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을 분석 표본에서 제외시키고, 광주시와 전라북도만을 처치 지역으로 설정한 분석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후의 강건성 검정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을 분석 표본에 포함시킨 경우의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권조례는 바람직한 행동 경향,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전반적인 만족도로 표현되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체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들 중 일부 변수들이 인권조례의 영향을 유의미하게 받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의 변수들에 대한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반면에, 인권조례는 학생들의 문제 행동으로부터의 피해 경험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향은 상위권 학생들에게서보다는 주로 중하위권 학생들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는 인권조례의 시행이 일부 학생들의 문제행동 경향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권위적 교육(authoritative teaching)을 다룬 외국의 관련 선행연구들(e.g., Baker et

al., 2009; Steinberg et al., 2006)에서 예측한 바에 대체로 부합한다.

본 논문은 아래에서 다음의 순서로 전개된다. 제Ⅱ장에서 우리는 학생인권조례의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된 법적인 논의들을 소개한다. 제Ⅲ장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 모형을 소개한다. 그리고 제Ⅴ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제Ⅵ장에서는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제Ⅶ장에서 제시한다.

Ⅱ. 제도적 배경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주체는 각 광역시도의 교육청이다. 2010년 10월에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조례를 도입하였고, 뒤이어 서울시(2012년 1월), 광주시(2012년 1월), 전라북도(2013년 7월)에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별로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된 날짜는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인권조례의 내용은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복장 및 두발 규제 금지, 소지품 검사 최소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인권조례를 도입한 교육청들은 관할 학교들이 조례에 따라 교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영향을 미친다. <표 1>은 각 지역별로 조례의 핵심 시행령을 보다 자세히 요약하고 있다.

<표 1>에 따르면,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서울시의 인권조례에는 ‘직·간접적 차별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서울시의 조례에서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조항이 차별을 금지하게 하는 근거로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이 조항은 다른 지역의 조례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이 조항 외에 ‘직·간접적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서울시 조례에서는 차별금지를 상대적으로 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 조례에 차별금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서울시에서는 조례 시행 이전부터 학내 차별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10년 11월부터 교육감 지시에 의해 학내 차별을 금지하고 있었다.¹⁾ 그리하여 서울시에서는 조

<표 1> 인권조례 시행안 지역별 요약

| | 경기도 | 서울시 | 광주시 | 전라북도 |
|-----------|---------------------------|---------------------------|---------------------------|---------------------------|
| 공포일 / 시행일 | 2010.10.05/ 2010.10.05 | 2012.01.26/ 2012.01.26 | 2011.10.28/ 2012.01.01 | 2013.07.12/ 2013.07.12 |

인권조례의 조항들:

| | | | | |
|----------------------------|-----------------|----------------|------------------|----------------|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2장 1절 5조 | 2장 1절 5조 | 3장 20조 | 2장 2절 8조 |
|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2장 2절 6조①항 | 2장 2절 6조①항 | 3장 19조 ③항 | 2장 3절 9조①항 |
|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선택의 자유 | 2장 3절 9조 | 2장 3절 9조 | 3장 10조 ②③④⑤항 | 2장 1절 6조 |
| 직·간접적 차별금지 | 2장 6조 2절 | - | 3장 11조 ②항 | 2장 3절 9조 ②항 |
| 복장 및 두발 규제 금지 | 2장 4절 11조 | 2장 4절 12조 | 3장 14조 ②항 | 2장 4절 12조 |
| 학생 소지품 검사의 최소화 | 2장 4절 12조 ①②④항 | 2장 4절 13조 ①②④항 | 12조 ①⑤⑥항 | 2장 4절 13조 ②항 |
|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 2장 5절 | 2장 5절 | 3장 13조 14조 | 2장 5절 16조 |
| 자치 및 참여의 권리 | 2장 6절 | 2장 6절 | 3장 15조 | 2장 6절 |
| 복지에 관한 권리 | 2장 7절 | 2장 7절 | 3장 17조 | 2장 7절 21조 |
|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2장 8절 | 2장 8절 | 3장 16조 | 2장 8절 26조 |
|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2장 9절 | 2장 9절 | 3장 22조 | 4장 |
|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2장 10절 | 2장 10절 | 3장 21조 | 3장 3절 |
| 인권교육 | 3장 1절 | 3장 1절 | 6장 | 2장 1절 7조 |
| 학생인권 옹호관 임명 및 학생인권 교육센터 설치 | 4장 39조 | 3절 38조, 42조 | 7장 | 3장 5절 42조, 43조 |
| 집회의 자유 | | 제 17조 | | |

- 1) 서울시 교육청의 「차별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2010)를 일컫는다. 다만 선행연구(박정원·이성훈, 2010)에서는 이 지시가 관련 법률과 조례를 위반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례의 도입보다 이른 시기에 학내 체벌이 사라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광주, 경기도, 전북에서는 ‘직·간접 체벌의 금지’를 명시한 조례를 시행한 시점으로부터 체벌이 사라졌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광주, 경기도, 전북에 시행된 인권조례의 효과 추정에서는 학내 체벌금지의 영향이 포함된다. 반면, 서울시에 대한 인권조례 효과의 추정은 학내 체벌금지의 효과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²⁾ 또한, 경기도의 경우 인권조례 시행 이전 시점을 자료에서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우리는 일차적인 분석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표본을 제외시킨다. 우리는 이들 지역의 표본을 추후 강건성 분석에서 포함시키고 그것의 분석 결과를 논의한다.

Ⅲ. 선행연구

인권조례의 효과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음을 암시한다. 인권 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외(2013)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례가 도입된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두발 및 복장 규제가 적고 체벌이나 언어폭력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낮다. 조석훈 외(2012)는 학교 현장의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 교사, 학부모, 학생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직접 체벌이 금지된 이후 교사들이 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고 있으며, 학생의 문제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보고한다. 또한 생활지도를 거부하는 학생들로 인해 다른 학생들과의 수업과 학습이 피해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조례가 학생과 교사 간의 친밀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한다.

이들 선행연구는 인권조례의 도입에 따라 학교 현장이 변화하는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의 결과를 인권조례의 진정한 인과효과로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들 연구는 조례가 시행된 이후의 시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조례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상황(counterfactual)을 고려하지 않는다. 조례 시행 이후 시점에 관측되는 조례 도입 지역과

2) 서울시, 광주시, 경기도, 전라북도에서의 조례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정희진(2015)의 제3장을 참조하라.

미도입 지역 간의 차이는 조례로 인한 차이뿐만 아니라, 조례 도입 이전부터 두 지역 사이에 존재했던 차이를 포함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석훈 외(2012)의 연구에서는 설문지 문항에 ‘학생인권조례’나 ‘체벌금지’와 같은 단어를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응답자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쳐 응답을 편향시킬 수 있다.

선행연구의 분석결과에 내재한 여러 가지 한계들을 고려할 때, 위의 선행연구들이 인권조례가 학생들의 행동에 미친 진정한 인과효과를 보여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이중차분법을 이용해 인권조례의 시행 이전 시점의 상황을 분석에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조례의 인과효과에 보다 가까운 추정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인권조례의 인과효과를 추정하는 본 연구는 권위적 교육의 효과를 다룬 외국의 연구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들로 하여금 권위적 교육방법(authoritative teaching) 대신에 관대한 교육방법(indulgent teaching)을 시행하도록 만드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일부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권위적 교육법이 관대한 교육법이나 무관심 교육법(neglectful teaching)에 비해 학생들(특히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적 성과를 만들어낸다고 말한다(Baker et al., 2009, Steinberg et al., 2006). 경제학 분야의 연구로서 Babcock(2009)은 도구변수법을 사용해 권위적 교육이 가지는 양(+)의 인과효과를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는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교사-학생 간 법적 분쟁에 대한 지역 법원의 판례 중 교사가 승소하는 비율을 해당 지역 내 학교들에서 권위적 교육이 이루어질 확률의 도구변수로서 활용한다. 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권위적 교육법은 학생의 태만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성과를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인다.

체벌은 권위적 교육법에서 빈번하게 의존하는 교육방법이기 때문에, 권위적 교육법의 효과를 다룬 연구들에서 체벌의 효과는 중요한 관심 사항의 하나다.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조례 도입에 관한 논의에서 체벌의 금지 여부가 많은 관심을 끈 사실도 이를 방증한다. 체벌의 효과를 다룬 개별 연구들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들 실증 연구를 메타분석법을 이용하여 정리한 연구들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주로 학부모 체벌의 효과를 다룬 117개의 실증연구들을 정리한 Gershoff(2010)에 따르면, 체벌은 대상 학생의 공격성을 증가시키고, 태만과 반사회적 행동을 야기하며 정신건강 문제를 불러오는 등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한다. 한편, 실증연구들을 정리한 또 다른 연구인 Larzelere and Kuhn(2005)는 적절하게 통제된 체벌은 오히려 효과적인 행동 교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단 연구들만을 정리한 Ferguson(2013) 역시 체벌

의 부정적인 효과가 기존 연구에서 믿어왔던 것만큼 크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부모 체벌의 영향을 다룬 연구들이 대단히 논쟁적인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학내 체벌의 교육적 효과를 다룬 학술연구는 대단히 드물고 그것의 효과 또한 일관된 결론이 존재하지 않는다(Gershoff et al., 2015; Babcock, 2009). 결국 체벌의 효과를 다룬 실증연구들은 아직 그것의 진정한 인과효과가 무엇인지에 관해 충분한 합의를 이루고 있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행동에 미친 영향을 탐구함으로써 학내 체벌금지,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는 관대한 교육방법이 학생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IV. 실증분석

본 연구는 실증분석 방법으로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사용한다. 추정방정식 모형은 다음과 같다.

$$y_{ijt} = \beta_0 + \beta_1 d_{jt} + \beta_2 X_{ijt} + \tau_t + \alpha_i + u_{ijt} \quad (1)$$

위 식에서 i 는 학생, j 는 학생의 학교, t 는 설문 응답 연도를 표시한다. y_{ijt} 는 성과 변수를 의미하며 τ_t 는 2010년에서 2013년까지의 연도 고정효과, α_i 는 개인 고정효과이다. 본 분석에서는 16개 시도 고정효과 대신에 분석대상 학생에 대한 개인 고정효과를 사용한다. 학생들이 분석대상 기간 동안 학교를 이동하지 않은 경우 16개 시도 고정효과는 학생 개인의 고정효과에 포함되고, 개인 고정효과가 패널 자료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분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³⁾ d_{jt} 는 응답자 i 가 인권조례의 처치를 적용 받은 경우 1을, 그렇지 않은 경우 0을 취하는 처치 더미변수이다. 그 계수 β_1 은 인권

3) 개인 고정효과 대신에 16개 시도 고정효과를 사용한 경우의 분석결과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분석결과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조례의 인과효과를 표시한다. X_{ijt} 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응답자의 개인 특성변수이다. 동일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사이에 오차항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질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를 단위로 하는 군집 표준오차를 사용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하는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구축하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의 1~4차년도 자료이다. 아동청소년 패널조사는 2010년 현재 초1, 초4, 중1에 재학 중인 학생 총 7,071명을 개별적으로 매년 추적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종단조사이다. 구체적으로, 이 조사의 모집단은 2010년 현재 초1, 초4, 중1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각 표본은 층화추출법을 통해 표집되었다. 초1, 초4, 중1 각각에 대해 98개, 95개, 75개의 표본 학교를 선정하고, 모집단의 인구구성을 반영하여 16개 시도별로 표본 규모를 설정한다. 그리고 각 시도당 3개교 이상의 학교가 포함되도록 표본을 구성한다. 이때 표본 학교는 학급수가 2개 이상이며, 학생수가 50명 이상인 학교들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자료는 현재 4차년도까지 공개되어 있다. 4차년도 자료는 2013년에 실시된 설문조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중1 코호트를 이용하여 인권조례의 효과를 분석한다. 원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중1 코호트 2,351명 학생들의 4년간 관측치는 총 8,998개다. 이들 중 조사대상 기간 4년 동안 시도 지역을 이동하거나, 학교를 이동한 적이 있는 학생들의 관측치(총 304개)는 분석에서 제외한다. 이 중차분법을 통해 처치의 인과효과를 구하기 위해서는 처치의 외생성이 필요한데, 이들 관측치의 경우 처치를 적용받거나 혹은 회피하기 위해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논문의 일차적인 분석에서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표본을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이들 두 지역을 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다음의 이유들로 인해 인권조례의 인과효과에 대한 추정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경기도의 경우 설문조사 시점과 조례 시행 시점 사이에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경기도의 조례는 2010년 10월 5일부터 시행되었고, 아동청소년 패널의 1차년도 설문조사는 2010년 10월 중에 실시되었다. 그에 따라 응답자들이 조사에서 응답한 내용이 조례 시행 이전의 상태를 반영하는지, 혹은 이후의 상태를 반영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즉 경기도 표본의 경우 처치 이전의 상황이 자료에 명확하게 반영되

4) 조사 자료의 구축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종원 외(2013)를 참조하라.

〈표 2〉 기술통계량 : 서울·경기를 제외한 표본

| 변수(단위) | 개수 | 평균 | 표준편차 | 최솟값 | 최댓값 |
|----------------|-------|--------|--------|-------|-------|
| 조례 더미 | 6,572 | 0.042 | 0.200 | 0 | 1 |
| 남학생 더미 | 6,572 | 0.522 | 0.500 | 0 | 1 |
| 만 나이 | 6,568 | 14.35 | 1.165 | 12 | 18 |
| 부 근로 여부 | 6,033 | 0.973 | 0.162 | 0 | 1 |
| 모 근로 여부 | 6,090 | 0.679 | 0.467 | 0 | 1 |
| 연 가구소득(만 원) | 6,343 | 4387.9 | 2393.6 | 0 | 24000 |
| 성적 자체평가(표준화점수) | 6,479 | -0.014 | 0.866 | -1.57 | 1.385 |
| 키(cm) | 4,853 | 165.6 | 7.883 | 137 | 190 |
| 몸무게(kg) | 4,840 | 56.67 | 11.19 | 30 | 120 |
| 형제 수(명) | 6,130 | 1.260 | 0.583 | 0 | 7 |

어 있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제II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울시의 인권조례는 도입 직후 법적인 공방에 휘말리며 원만하게 시행되지 못했다. 게다가 서울시의 경우 차별금지 조항은 2010년부터 사실상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조례 시행 이전 시점을 차별금지 처치의 이전 시점이라고 분류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본 논문에서 우리는 서울과 경기 지역을 제외한 표본을 대상으로 일차적인 실증분석을 진행한다. 이 경우 처치가 적용되는 지역은 광주시와 전라북도로 국한된다.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경우의 분석결과는 제VI장의 강건성 검증

에서 다루어진다. 그러나 이들 두 지역을 실증분석에 포함시키더라도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질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분석 표본에 포함된 총 6,572개 관측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 따르면, 전체 관측치들 중 4.2%가 인권조례의 처치를 받는 관측치들이다. 관측치들의 52%는 남학생이고, 평균 연령은 14.5세이며, 부친(모친)이 근로하고 있을 확률은 각각 97%(68%)이다. 평균 가구소득은 연간 4,388만 원이고, 본인이 보고한 성적의 표준화 점수의 평균은 -0.014이다. 학생들의 평균 키는 165.6cm이고, 평균 몸무게는 56.7kg이며, 평균 형제자매의 수는 1.26명이다.

<표 3>에는 본 논문의 분석대상이 되는 성과변수들이 제시되어 있다. 표의 패널 A의 6개의 변수들은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 수행과 관련된 변수들이고, 패널 B의 변수들은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패널 C의 세 변수는 삶의 만족도를 표시한다. 패널 D의 변수들은 학생의 문제 행동 유형들이고, 패널 E의 변수들은 피해를 경험한 문제 유형들을 표시한다.

패널 A~C의 모든 종속변수는 설문지의 해당 질문에 대한 1~4의 Likert 척도 응답치의 형태로 주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에서 수집한 원래의 값을 재코딩하여 설문 응답이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경우에는 0,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경우에는 1의 값을 갖도록 수정하였다. 가령,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1(매우 그렇다), 2(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 1로 코딩하고, 3(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패널 D와 E의 변수들은 각 행동을 하거나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을 취한다. 패널 D의 ‘(13) 문제행동 여부’는 ‘(1) 흡연’~‘(12) 성관계’의 총 12가지 문제행동들 중 적어도 하나의 행동을 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1의 값을, 아무런 문제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0의 값을 취한다. 마찬가지로, 패널 E의 ‘(7) 문제행동 피해 여부’는 ‘(1) 놀림/조롱’~‘(6) 성희롱’의 총 6가지 문제행동들 중 한 가지라도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1의 값을, 전혀 피해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0의 값을 취한다.

<표 3>의 변수 설명 옆에는 각 종속변수를 구성하는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

〈표 3〉 분석대상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 서울·경기 제외한 표본

| 변수명 | 개수 | 평균 | 표준편차 | 변수 설명 |
|---------------------|-------|-------|-------|------------------------------------|
| A. 바람직한 행동 | | | | |
| (1) 숙제 수행 | 6,572 | 0.674 | 0.469 |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
| (2) 수업 집중 | 6,572 | 0.444 | 0.497 | 공부 시간에 딴짓을 한다. |
| (3) 역할 책임 | 6,572 | 0.788 | 0.409 | 당번이나 1인 1역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
| (4) 복도 정숙 | 6,572 | 0.472 | 0.499 |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
| (5) 질서 지키기 | 6,572 | 0.755 | 0.430 |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 |
| (6) 쓰레기 처리 | 6,572 | 0.741 | 0.438 |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다. |
| B. 교우 및 교사관계 | | | | |
| (1) 교우관계 | 6,572 | 0.933 | 0.250 |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
| (2) 반갑게 인사 | 6,572 | 0.826 | 0.379 |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
| (3) 편함 | 6,572 | 0.542 | 0.498 |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
| (4) 만나면 반가움 | 6,572 | 0.636 | 0.481 |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
| (5) 교사 친절 | 6,572 | 0.807 | 0.395 |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
| (6) 내년 담임 | 6,572 | 0.556 | 0.497 |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
| C. 삶의 만족도 | | | | |
| (1) 즐거움 | 4,906 | 0.810 | 0.392 | 나는 사는 게 즐겁다. |
| (2) 걱정 유무 | 4,906 | 0.463 | 0.499 |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
| (3) 행복도 | 4,906 | 0.765 | 0.424 |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
| D. 본인의 문제 행동 | | | | |
| (1) 흡연 | 4,861 | 0.077 | 0.266 | 담배 피우기 |
| (2) 음주 | 4,860 | 0.084 | 0.278 | 술 마시기(제사나 종교 의식은 제외) |
| (3) 무단결석 | 4,858 | 0.031 | 0.175 | 보호자나 선생님께 알리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은 경우 |
| (4) 가출 | 4,859 | 0.025 | 0.156 | 하룻밤 이상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 |

〈표 3〉의 계속

| 변수명 | 개수 | 평균 | 표준편차 | 변수 설명 |
|--------------------|-------|-------|-------|----------------------|
| D. 본인의 문제행동 | | | | |
| (5) 놀림/조롱 | 4,861 | 0.052 | 0.221 |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
| (6) 집단 따돌림 | 4,861 | 0.016 | 0.127 | 다른 사람 집단 따돌림(왕따)시키기 |
| (7) 패싸움 | 4,861 | 0.003 | 0.059 | 패싸움 |
| (8) 폭행 | 4,861 | 0.016 | 0.125 |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
| (9) 협박 | 4,860 | 0.006 | 0.076 | 다른 사람 협박하기 |
| (10) 물건 빼앗기 | 4,861 | 0.010 | 0.100 |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빼기(뺑뜨기) |
| (11) 물건 훔치기 | 4,861 | 0.005 | 0.073 |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
| (12) 성관계 | 4,861 | 0.003 | 0.054 | 성관계 |
| (13) 문제행동 여부 | 4,861 | 0.189 | 0.392 | 적어도 하나의 문제행동 |
| E. 피해 경험 | | | | |
| (1) 놀림/조롱 | 4,861 | 0.043 | 0.202 |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 |
| (2) 집단 따돌림 | 4,861 | 0.017 | 0.130 | 집단 따돌림(왕따) 당하기 |
| (3) 폭행 | 4,861 | 0.015 | 0.120 | 심하게 맞기(폭행) |
| (4) 협박 | 4,860 | 0.009 | 0.095 | 협박당하기 |
| (5) 물건 빼앗김 | 4,858 | 0.024 | 0.153 | 돈이나 물건 빼기기(뺑뜨기기) |
| (6) 성희롱 | 4,859 | 0.004 | 0.066 | 성폭행이나 성희롱 |
| (7) 문제행동 피해 여부 | 4,861 | 0.073 | 0.261 | 적어도 하나의 피해 경험 |

V. 분석 결과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장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표본을 분석에서 제외한다. 즉, 본 장에서는 인권조례의 적용 시점이 가장 뚜렷하게 식별되는 광주와 전북만을 처치 지역으로 설정한다.

<표 4>에는 바람직한 행위 영역에 속하는 변수들에 대해 인권조례가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패널 1은 조례더미와 4개의 연도더미를 통제된 상태에서 패널 개인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패널 2는 이들 변수 이외에 학생의 만 나이, 모친의 근로 여부, 가구소득을 추가적으로 통제된 모형의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인권조례가 각 종속변수에 미친 영향의 추정치는 조례더미에 대한 계수 값이다. 표의 홀수 열에서는 조례 시행 지역(광주와 전북)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조례 시행 자체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제시한다. 짝수 열에는 광주와 전북 조례의 효과가 서로 다르다고 가정하는 모형의 추정결과가 제시되어 있다.⁵⁾

<표 4>의 결과에 따르면, 광주와 전북에 시행된 인권조례는 학생의 6가지 유형의 바람직한 행동에 대체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특성변수들을 통제하든 그렇지 않든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복도 정숙의 경우 광주와 전북의 조례는 학생들에게 유의미하지만 서로 반대되는 영향을 미친다. 인권조례 시행 이후 광주 학생들의 복도 정숙 행동은 감소한 반면, 전북 학생들의 복도 정숙 행동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표 5>에는 <표 4>와 동일한 추정방법을 통해 인권조례가 교우관계와 교사관계에

5) 인권조례의 효과가 광주와 전북에서 서로 다르다고 가정하는 추정모형은 아래와 같다.

$$y_{ijt} = \beta_0 + (\beta_1^{KJ} dKJ_{jt} + \beta_1^{JB} dJB_{jt}) + \beta_2 X_{ijt} + \tau_t + \alpha_i + u_{ijt}$$

위 식에서 dKJ_{jt} 는 광주 조례에 대한 처치변수로서 $t \geq 2012$ 인 광주지역 관측치인 경우 1의 값을, 광주 지역 관측치가 아니거나 $t < 2012$ 인 광주 지역 관측치인 경우 0의 값을 취한다. 마찬가지로, dJB_{jt} 는 전북 조례에 대한 처치변수로서 $t \geq 2013$ 인 전북 지역 관측치인 경우 1의 값을, 전북 지역 관측치가 아니거나 $t < 2013$ 인 전북 지역 관측치인 경우 0의 값을 취한다. 식 (1)의 $d_{jt} = dKJ_{jt} + dJB_{jt}$ 로서 정의할 수 있다.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4>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표 5>의 결과 또한 광주와 전북에 시행된 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교우관계와 교사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인권조례 시행 이후 광주의 학생들이 교사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행동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표 4> 바람직한 행동의 수행도 변화: 서울, 경기 제외

| 종속 변수 | (1) 숙제 수행 | (2) 수업집중 | (3) 책입감 | (4) 복도정숙 | (5) 질서 지키기 | (6) 쓰레기처리 |
|--|---------------------|---------------------|---------------------|---------------------|----------------------|----------------------|
| | (1) | (2) | (3) | (4) | (5) | (6) |
| 패널 1. 기본 (관측치수=6,572, 학생의 수=1,711) | | | | | | |
| 조례 | -0.0062 [0.0400] | -0.0251 [0.0441] | -0.0122 [0.0341] | -0.0065 [0.0413] | -0.0217 [0.0367] | -0.0130 [0.0378] |
| 광주 | | -0.0698 [0.0500] | -0.068 [0.0661] | -0.0326 [0.0375] | -0.121** [0.0565] | -0.0812* [0.0483] |
| 전북 | | 0.0634 [0.0605] | 0.0217 [0.0549] | 0.0100 [0.0563] | 0.119** [0.0559] | 0.0433 [0.0531] |
| 조례 | | | | | | 0.0618 [0.0520] |
| 패널 2. 통제변수 추가 (관측치수=5,933, 학생의 수=1,628) | | | | | | |
| 조례 | -0.0139 [0.0419] | -0.0410 [0.0463] | -0.0148 [0.0365] | -0.0005 [0.0442] | -0.0316 [0.0396] | -0.0137 [0.0419] |
| 광주 | | -0.0797 [0.0526] | -0.0806 [0.0705] | -0.0372 [0.0394] | -0.113* [0.0608] | -0.095* [0.0523] |
| 전북 | | 0.0588 [0.0633] | 0.00268 [0.0556] | 0.0099 [0.0612] | 0.124** [0.0600] | 0.0384 [0.0570] |
| 조례 | | | | | | 0.0659 [0.0573] |

주: 괄호 안은 군집을 고려한 표준오차(군집의 기준은 학교 ID). 추정모형에는 연도 고정효과와 개인 고정효과가 포함되어 있음. ** p<0.05, * p<0.1

<표 5>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변화 : 서울·경기 제외

| 종속 변수 | (1) 교우관계 | | (2) 반갑게 인사 | | (3) 교사가 편함 | | (4) 만나면 반가움 | | (5) 교사 친절 | | (6) 내년도 담임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패널 1. 기본 (관측치수=6,572, 학생의 수=1,711) | | | | | | | | | | | | |
| 조례 | -0.0040 | | -0.0382 | | -0.0064 | | -0.0199 | | -0.0021 | | 0.0144 | |
| | [0.0183] | | [0.0291] | | [0.0398] | | [0.0372] | | [0.0307] | | [0.0448] | |
| 광주 | | 0.0219 | | -0.071** | | -0.0132 | | -0.0727 | | -0.0349 | | -0.0434 |
| 조례 | | [0.0235] | | [0.0361] | | [0.0510] | | [0.0501] | | [0.0355] | | [0.0591] |
| 전북 | | -0.0324 | | -0.0022 | | 0.0011 | | 0.0378 | | 0.0336 | | 0.0775 |
| 조례 | | [0.0266] | | [0.0447] | | [0.0601] | | [0.0532] | | [0.0496] | | [0.0649] |
| 패널 2. 통제변수 추가 (관측치수=5,933, 학생의 수=1,628) | | | | | | | | | | | | |
| 조례 | 0.0032 | | -0.0374 | | 0.0012 | | -0.0169 | | -0.0002 | | 0.0200 | |
| | [0.0196] | | [0.0303] | | [0.0425] | | [0.0396] | | [0.0328] | | [0.0486] | |
| 광주 | | 0.0224 | | -0.0729* | | -0.0139 | | -0.0847 | | -0.0374 | | -0.0495 |
| 조례 | | [0.0259] | | [0.0388] | | [0.0550] | | [0.0534] | | [0.0357] | | [0.0636] |
| 전북 | | -0.0180 | | 0.0018 | | 0.0179 | | 0.058 | | 0.0409 | | 0.0968 |
| 조례 | | [0.0276] | | [0.0454] | | [0.0635] | | [0.0556] | | [0.0551] | | [0.0711] |

주: 괄호 안은 군집을 고려한 표준오차(군집의 기준은 학교 ID). 추정모형에는 연도 고정효과와 개인 고정 효과가 포함되어 있음. ** p<0.05, * p<0.1

<표 6> 삶의 만족도 변화 : 서울, 경기 제외

| 종속변수 | (7) 즐거움 | | (8) 걱정거리 유무 | | (9) 행복함 | |
|--|---------|----------|-------------|----------|----------|----------|
| | (1) | (2) | (3) | (4) | (5) | (6) |
| 패널 1. 기본 (관측치수=4,906, 학생의 수=1,711) | | | | | | |
| 조례 | | -0.0500 | | 0.0070 | | -0.0092 |
| | | [0.0381] | | [0.0470] | | [0.0389] |
| 광주 | | | -0.0738 | | 0.0156 | |
| 조례 | | | [0.0528] | | [0.0708] | |
| 전북 | | | -0.0303 | | -0.0001 | |
| 조례 | | | [0.0531] | | [0.0613] | |
| 패널 2. 통제변수 추가 (관측치수=4,434, 학생의 수=1,618) | | | | | | |
| 조례 | | -0.0294 | | 0.0026 | | 0.0199 |
| | | [0.0425] | | [0.0521] | | [0.0421] |
| 광주 | | | -0.0551 | | 0.0208 | |
| 조례 | | | [0.0612] | | [0.0814] | |
| 전북 | | | -0.0094 | | -0.0116 | |
| 조례 | | | [0.0576] | | [0.0663] | |

주: 괄호 안은 군집을 고려한 표준오차(군집의 기준은 학교 ID). 추정모형에는 연도 고정효과와 개인 고정효과가 포함되어 있음. ** p<0.05, * p<0.1

인권조례 이후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변화를 추정한 <표 6>의 결과 또한 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대체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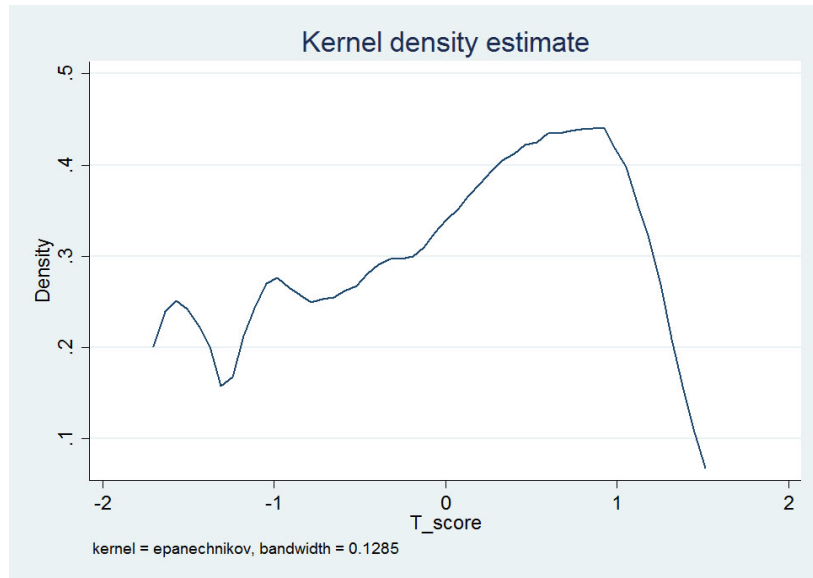
<표 4>~<표 6>의 추정모형에서는 인권조례의 효과가 학생들 사이에 서로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인권조례가 유발한 학급 내 그리고 학교 내 교육환경 변화는 학생들마다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권조례 시행에 따라 학내 체벌이 금지되는 경우, 학습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은 중위권이나 하위권인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권조례의 효과가 동질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우리는 <표 7>에서 분석 표본을 학생의 성적 수준별로 구분한 후 <표 4>~<표 6>에서와 동일한 추정을 하였다. 이때 사용한 성적 수준은 광주와 전북에 조례가 도입되기 직전인 2차년도(2011년) 시점에 학생들이 스스로 보고한 성적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국어, 수학, 영어 각각에 대하여 자신의 점수를 8개의 범주(1. 96점 이상, 2. 90점 이상 95점 이하, 3. 85점 이상 89점 이하, 4. 80점 이상 84점 이하, 5. 75점 이상 79점 이하, 6. 70점 이상 74점 이하, 7. 65점 이상 69점 이하, 8. 64점 이하)로 나누어 보고한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각 구간의 중간 값을 학생 개인의 점수라고 가정하고, 각 과목별로 원점수를 z-점수로 표준화시켜 사용한다.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각 과목 표준점수의 평균값을 학생의 최종 성적으로서 사용한다. [그림 1]은 이와 같이 구축한 표준점수 평균값의 분포를 보여준다. 이 평균값이 상위 33% 이내인 학생들을 상위권, 하위 33%인 학생들을 하위권, 나머지 학생들은 중위권으로 분류한다.

<표 7>에는 학생들의 표본을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분리하여 각각 인권조례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간편한 비교를 위해 <표 7> (1)~(3)열에는 각각 <표 4>~<표 6>의 패널 1의 추정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표의 (4)~(6)열에는 상위권 학생들, (7)~(9)열에는 중위권 학생들, 그리고 (10)~(12)열에는 하위권 학생들에 대한 추정결과가 각각 제시되어 있다.

<표 7>에 따르면, 전체 표본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인권조례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행동 수행 정도에 대체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예외적으로, 광주의 조례가 광주의 하위권 학생들의 숙제 수행 경향을 감소시키고, 전북의 조례가 전북의 중위권 학생들의 복도 정숙 정도를 증가시키는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될 뿐이다. 인권조례는 또한 학생들의 교우관계나 교사관계에도 대체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예외적으로 광주의 조례가 광주의 중위권 학생들이 교사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경향을

[그림 1] 국·영·수 표준점수 평균의 확률밀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관측된다. 그리고 전복의 조례가 전복의 중위권 학생들의 교사 친절에 대한 인식 정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발견될 뿐이다.

<표 7>의 패널 C의 결과에 따르면,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영향을 학생들의 성적 수준별로 구분하면, 상위권 학생들이 인권조례 시행 이후 ‘사는 게 즐겁다’고 답할 확률이 0.14 정도 유의미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표본에서 이 확률이 0.799임을 감안할 때, 상위권 학생들은 인권조례 시행 이후 약 17.5%(=0.14/0.799) 정도 ‘사는 게 즐겁다’고 응답할 확률이 하락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광주와 전복의 조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그러나 중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만족도의 변화가 관측되지 않는다. 아울러, ‘걱정 유무’나 ‘행복도’로 표현되는 삶의 만족도 변수들에 대해서는 인권조례의 유의미한 영향이 관측되지 않는다.

<표 7>에서는 인권조례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한 종속변수로서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표 8>에서는 인권조례가 학생들의 문제행동 경향이나 다른 학생으로부터의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 조사 설문지에서 이용 가능한 응답 문항들 중에서, 학생 본인이 취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행동으로서 12개

〈표 7〉 성적별 효과 추정: 바람직한 행동, 교우/교사관계, 삶의 만족도

| | 전체 표본 | | | 상위 33% | | | 중위 33% | | | 하위 33%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조례 | 광주조례 | 전북조례 | 조례 | 광주조례 | 전북조례 | 조례 | 광주조례 | 전북조례 | 조례 | 광주조례 | 전북조례 |
| A. 바람직한 행동: | | | | | | | | | | | | |
| (1) 숙제 수행 | -0.006 | -0.070 | 0.063 | 0.022 | -0.072 | 0.142* | 0.053 | 0.070 | 0.038 | -0.086 | -0.176** | 0.018 |
| | [0.040] | [0.050] | [0.060] | [0.055] | [0.069] | [0.079] | [0.073] | [0.100] | [0.103] | [0.077] | [0.089] | [0.124] |
| (2) 수업 집중도 | -0.025 | -0.068 | 0.022 | -0.085 | -0.203* | 0.066 | -0.048 | -0.038 | -0.057 | 0.063 | 0.060 | 0.065 |
| | [0.044] | [0.066] | [0.055] | [0.074] | [0.104] | [0.088] | [0.081] | [0.123] | [0.104] | [0.073] | [0.112] | [0.087] |
| (3) 책임감 | -0.012 | -0.033 | 0.010 | 0.030 | 0.018 | 0.044 | 0.043 | -0.040 | 0.115 | -0.106* | -0.079 | -0.138 |
| | [0.034] | [0.038] | [0.056] | [0.052] | [0.064] | [0.084] | [0.058] | [0.049] | [0.095] | [0.064] | [0.072] | [0.104] |
| (4) 복도 정숙 | -0.007 | -0.121** | 0.119** | -0.007 | -0.034 | 0.027 | 0.053 | -0.129 | 0.210** | -0.054 | -0.197* | 0.110 |
| | [0.041] | [0.056] | [0.056] | [0.071] | [0.093] | [0.108] | [0.070] | [0.097] | [0.086] | [0.073] | [0.100] | [0.093] |
| (5) 질서 지키기 | -0.022 | -0.081* | 0.043 | -0.053 | -0.018 | -0.096 | -0.043 | -0.175* | 0.070 | 0.024 | -0.074 | 0.136* |
| | [0.037] | [0.048] | [0.053] | [0.061] | [0.072] | [0.100] | [0.070] | [0.102] | [0.089] | [0.060] | [0.080] | [0.081] |
| (6) 쓰레기 처리 | -0.013 | -0.081 | 0.062 | -0.023 | -0.016 | -0.032 | 0.000 | -0.039 | 0.034 | -0.008 | -0.172* | 0.180** |
| | [0.038] | [0.051] | [0.052] | [0.060] | [0.072] | [0.096] | [0.067] | [0.101] | [0.086] | [0.069] | [0.092] | [0.085] |
| B. 교우/교사관계: | | | | | | | | | | | | |
| (1) 교우관계 | -0.004 | 0.022 | -0.032 | 0.041* | 0.069* | 0.006 | -0.020 | -0.024 | -0.017 | -0.028 | 0.018 | -0.082 |
| | [0.018] | [0.023] | [0.027] | [0.023] | [0.036] | [0.016] | [0.019] | [0.020] | [0.027] | [0.046] | [0.053] | [0.073] |
| (2) 반갑게 인사 | -0.038 | -0.071** | -0.002 | -0.061 | -0.054 | -0.071 | -0.046 | -0.141** | 0.036 | -0.004 | -0.026 | 0.02 |
| | [0.029] | [0.036] | [0.045] | [0.040] | [0.055] | [0.057] | [0.054] | [0.065] | [0.079] | [0.056] | [0.067] | [0.088] |
| (3) 교사가 편함 | -0.006 | -0.013 | 0.001 | -0.018 | -0.003 | -0.037 | -0.011 | -0.062 | 0.033 | 0.000 | 0.002 | -0.003 |
| | [0.040] | [0.051] | [0.060] | [0.067] | [0.080] | [0.109] | [0.065] | [0.090] | [0.090] | [0.074] | [0.093] | [0.113] |
| (4) 반가움 | -0.020 | -0.073 | 0.038 | -0.027 | -0.102 | 0.068 | -0.040 | -0.117 | 0.026 | -0.004 | -0.022 | 0.016 |
| | [0.037] | [0.050] | [0.053] | [0.051] | [0.064] | [0.077] | [0.067] | [0.095] | [0.090] | [0.073] | [0.098] | [0.105] |
| (5) 교사 친절 | -0.002 | -0.035 | 0.034 | -0.006 | 0.012 | -0.029 | 0.091* | -0.002 | 0.171** | -0.086 | -0.106* | -0.062 |
| | [0.031] | [0.035] | [0.050] | [0.049] | [0.056] | [0.083] | [0.051] | [0.068] | [0.069] | [0.056] | [0.059] | [0.096] |
| (6) 내년 답임 | 0.014 | -0.043 | 0.077 | -0.042 | -0.090 | 0.018 | 0.066 | -0.024 | 0.145 | 0.018 | -0.022 | 0.064 |
| | [0.045] | [0.059] | [0.065] | [0.075] | [0.100] | [0.107] | [0.081] | [0.106] | [0.113] | [0.077] | [0.100] | [0.113] |
| 관측치 수 | 6,572 | | | 2,103 | | | 2,137 | | | 2,239 | | |
| 학생의 수 | 1,711 | | | 537 | | | 547 | | | 578 | | |

<표 7>의 계속

| | 전체 표본 | | | 상위 33% | | | 중위 33% | | | 하위 33%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조례 | 광주조례 | 전북조례 | 조례 | 광주조례 | 전북조례 | 조례 | 광주조례 | 전북조례 | 조례 | 광주조례 | 전북조례 |
| C. 삶의 만족도: | | | | | | | | | | | | |
| (1) 즐거움 | -0.050 [0.038] | -0.074 [0.053] | -0.030 [0.053] | -0.144** [0.057] | -0.109* [0.064] | -0.178* [0.091] | 0.016 [0.074] | -0.062 [0.117] | 0.067 [0.094] | -0.021 [0.064] | -0.045 [0.097] | 0.000 [0.081] |
| (2) 걱정 유무 | 0.007 [0.047] | 0.016 [0.071] | 0.000 [0.061] | -0.016 [0.071] | 0.044 [0.109] | -0.073 [0.086] | 0.019 [0.090] | 0.071 [0.138] | -0.015 [0.116] | 0.024 [0.084] | -0.047 [0.125] | 0.086 [0.107] |
| (3) 행복도 | -0.009 [0.039] | -0.039 [0.054] | 0.015 [0.053] | -0.004 [0.056] | -0.007 [0.072] | -0.002 [0.085] | -0.044 [0.070] | -0.119 [0.111] | 0.005 [0.086] | 0.023 [0.076] | 0.002 [0.104] | 0.041 [0.105] |
| 관측치 수 | 4,906 | | | 1,566 | | | 1,590 | | | 1,663 | | |
| 학생의 수 | 1,711 | | | 537 | | | 547 | | | 578 | | |

주: 괄호 안은 군집을 고려한 표준오차(군집의 기준은 학교 ID). 추정모형에는 연도 고정효과와 개인 고정효과가 포함되어 있음. ** p<0.05, * p<0.1

유형(흡연, 음주, 무단결석, 기출, 놀림/조롱, 왕따, 패싸움, 폭행, 협박, 물건 빼앗기, 물건 훔치기, 성관계)을, 그리고 다른 학생으로부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문제행동으로서 6개 유형(놀림/조롱, 왕따, 폭행, 협박, 물건을 빼앗김, 성희롱)을 사용하였다.

<표 8>의 패널 A의 결과에 따르면,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할 때 인권조례는 학생들의 문제행동 경향에 대체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예외적으로, 전북의 조례가 전북 학생들의 무단결석 확률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쳤다. 표본을 학생들의 성적 수준별로 분리하는 경우, 인권조례가 하위권 학생들의 문제행동 경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관측된다. 예를 들어, 전북의 조례는 전북의 하위권 학생들의 무단결석 확률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광주의 조례는 광주의 하위권 학생들이 다른 사람을 집단 따돌림(왕따)하거나 물건을 빼앗는 행동 경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집단 따돌림(0.016)과 물건 빼앗기(0.010)의 빈도 자체가 대단히 낮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행동 변화가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표 8〉 성적별 효과 추정: 본인의 문제 행동과 피해 경험

| | 전체 표본 | | | 상위 33% | | | 중위 33% | | | 하위 33% | | |
|----------------|---------------------|-------------------|---------------------|-------------------|--------------------|-------------------|-------------------|-------------------|-------------------|---------------------|--------------------|---------------------|
| | (1) 조례 | (2) 광주조례 | (3) 전북조례 | (4) 조례 | (5) 광주조례 | (6) 전북조례 | (7) 조례 | (8) 광주조례 | (9) 전북조례 | (10) 조례 | (11) 광주조례 | (12) 전북조례 |
| A. 본인행동 | | | | | | | | | | | | |
| (1) 흡연 | 0.008 [0.026] | 0.028 [0.039] | -0.009 [0.033] | -0.002 [0.034] | 0.011 [0.045] | -0.015 [0.047] | 0.031 [0.043] | 0.036 [0.081] | 0.028 [0.047] | -0.005 [0.054] | 0.038 [0.078] | -0.043 [0.073] |
| (2) 음주 | 0.005 [0.032] | -0.025 [0.043] | 0.030 [0.046] | -0.061 [0.051] | -0.070 [0.066] | -0.052 [0.077] | 0.043 [0.058] | -0.008 [0.083] | 0.077 [0.078] | 0.032 [0.055] | 0.003 [0.074] | 0.057 [0.077] |
| (3) 무단결석 | -0.034** [0.014] | -0.015 [0.017] | -0.050** [0.020] | -0.038 [0.028] | -0.028 [0.039] | -0.047 [0.041] | -0.009 [0.019] | 0.013 [0.027] | -0.023 [0.025] | -0.052** [0.022] | -0.023 [0.015] | -0.077** [0.036] |
| (4) 가출 | -0.016 [0.012] | -0.006 [0.015] | -0.024 [0.017] | -0.001 [0.009] | 0.008 [0.006] | -0.009 [0.019] | -0.001 [0.009] | -0.002 [0.009] | -0.001 [0.011] | -0.046 [0.032] | -0.023 [0.043] | -0.065 [0.046] |
| (5) 놀람/조롱 | 0.020 [0.021] | 0.013 [0.028] | 0.027 [0.030] | 0.000 [0.033] | -0.043 [0.044] | 0.041 [0.051] | 0.048* [0.026] | 0.082* [0.047] | 0.025 [0.027] | 0.014 [0.044] | 0.011 [0.049] | 0.016 [0.070] |
| (6) 집단 따돌림 | 0.010 [0.014] | 0.034* [0.020] | -0.009 [0.020] | 0.013 [0.030] | 0.003 [0.044] | 0.022 [0.042] | 0.011 [0.019] | 0.047* [0.027] | -0.012 [0.024] | 0.007 [0.023] | 0.054** [0.024] | -0.034 [0.035] |
| (7) 껄싸움 | 0.005 [0.009] | 0.013 [0.019] | -0.002 [0.006] | 0.002 [0.014] | 0.017 [0.019] | -0.014 [0.018] | 0.020 [0.019] | 0.052 [0.045] | -0.001 [0.005] | -0.006 [0.015] | -0.022 [0.032] | 0.007 [0.004] |
| (8) 폭행 | -0.005 [0.011] | 0.004 [0.019] | -0.012 [0.013] | 0.009 [0.011] | 0.021** [0.009] | -0.003 [0.019] | 0.002 [0.012] | 0.018* [0.009] | -0.008 [0.018] | -0.025 [0.029] | -0.024 [0.052] | -0.025 [0.030] |
| (9) 협박 | 0.003 [0.010] | -0.002 [0.015] | 0.008 [0.014] | -0.002 [0.009] | 0.008 [0.005] | -0.012 [0.019] | 0.006* [0.004] | 0.007 [0.005] | 0.006* [0.003] | 0.007 [0.029] | -0.018 [0.042] | 0.028 [0.040] |
| (10) 물건 빼앗기 | 0.000 [0.011] | 0.011 [0.019] | -0.008 [0.012] | -0.018 [0.021] | -0.027 [0.039] | -0.011 [0.019] | 0.024 [0.017] | 0.046 [0.039] | 0.010* [0.005] | -0.004 [0.016] | 0.021** [0.009] | -0.026 [0.030] |
| (11) 물건 훔치기 | 0.011 [0.007] | 0.019 [0.013] | 0.004 [0.003] | -0.002 [0.002] | -0.002 [0.002] | -0.001 [0.003] | 0.023 [0.019] | 0.055 [0.045] | 0.002 [0.005] | 0.011* [0.006] | 0.011 [0.007] | 0.011* [0.006] |
| (12) 성관계 | 0.002 [0.005] | 0.009 [0.010] | -0.004 [0.003] | -0.002 [0.002] | -0.002 [0.002] | -0.001 [0.003] | 0.009 [0.012] | 0.018 [0.025] | 0.003 [0.004] | -0.001 [0.010] | 0.011 [0.021] | -0.012** [0.006] |
| 관측치 수 | 4,861 | | | 1,566 | | | 1,590 | | | 1,661 | | |
| 학생의 수 | 1,685 | | | 537 | | | 547 | | | 577 | | |

<표 8>의 계속

| | 전체 표본 | | | 상위 33% | | | 중위 33% | | | 하위 33% | | |
|-------------------|-------------------|---------------------|-------------------|-------------------|-------------------|--------------------|--------------------|-------------------|--------------------|-------------------|---------------------|--------------------|
| | (1) 조례 | (2) 광주조례 | (3) 전북조례 | (4) 조례 | (5) 광주조례 | (6) 전북조례 | (7) 조례 | (8) 광주조례 | (9) 전북조례 | (10) 조례 | (11) 광주조례 | (12) 전북조례 |
| A. 본인행동: | | | | | | | | | | | | |
| (13) 문제 행동 여부 | 0.017 [0.040] | 0.025 [0.056] | 0.009 [0.056] | -0.063 [0.070] | -0.121 [0.094] | -0.008 [0.101] | 0.051 [0.056] | 0.108 [0.096] | 0.014 [0.067] | 0.061 [0.077] | 0.104 [0.090] | 0.024 [0.119] |
| B. 피해경험: | | | | | | | | | | | | |
| (1) 놀림/조롱 | 0.027* [0.016] | 0.026 [0.022] | 0.027 [0.022] | -0.002 [0.035] | -0.016 [0.049] | 0.011 [0.047] | 0.039** [0.018] | 0.031 [0.029] | 0.044** [0.021] | 0.042 [0.027] | 0.060** [0.025] | 0.026 [0.044] |
| (2) 집단 따돌림 | 0.009 [0.010] | 0.019*** [0.006] | 0.001 [0.017] | -0.010 [0.020] | 0.005 [0.006] | -0.024 [0.037] | 0.009 [0.011] | 0.015 [0.010] | 0.005 [0.017] | 0.026 [0.018] | 0.037*** [0.012] | 0.017 [0.032] |
| (3) 폭행 | 0.006 [0.011] | 0.025** [0.011] | -0.010 [0.018] | 0.012 [0.009] | 0.020 [0.020] | 0.004 [0.005] | 0.022* [0.013] | 0.034 [0.026] | 0.014* [0.007] | -0.017 [0.029] | 0.022** [0.010] | -0.050 [0.052] |
| (4) 협박 | 0.004 [0.011] | 0.001 [0.021] | 0.007 [0.007] | 0.006 [0.004] | 0.005 [0.006] | 0.008** [0.004] | 0.003 [0.017] | -0.013 [0.039] | 0.013** [0.006] | 0.003 [0.026] | 0.006 [0.052] | 0.000 [0.019] |
| (5) 물건 빼앗김 | -0.004 [0.017] | -0.025 [0.034] | 0.013 [0.012] | -0.047 [0.036] | -0.086 [0.067] | -0.010 [0.026] | 0.022 [0.021] | 0.021 [0.041] | 0.022 [0.018] | 0.015 [0.030] | 0.000 [0.057] | 0.028 [0.020] |
| (6) 성희롱 | 0.008 [0.005] | 0.013 [0.010] | 0.004* [0.002] | 0.002 [0.002] | 0.002 [0.003] | 0.001 [0.001] | 0.009 [0.012] | 0.020 [0.026] | 0.003 [0.006] | 0.013 [0.011] | 0.020 [0.021] | 0.008** [0.004] |
| (7) 문제행동 피해 여부 | 0.036 [0.022] | 0.038 [0.034] | 0.033 [0.026] | -0.017 [0.039] | -0.037 [0.058] | 0.003 [0.047] | 0.062** [0.029] | 0.064 [0.056] | 0.060** [0.027] | 0.060 [0.044] | 0.091 [0.059] | 0.034 [0.059] |
| 관측치 수 | 4,861 | | | 1,566 | | | 1,590 | | | 1,661 | | |
| 학생의 수 | 1,685 | | | 537 | | | 547 | | | 577 | | |

주: 괄호 안은 군집을 고려한 표준오차(군집의 기준은 학교 ID). 추정모형에는 연도 고정효과와 개인 고정 효과가 포함되어 있음.

** p<0.05, * p<0.1

인권조례 시행이 12가지 문제행동 중 적어도 하나의 문제행동을 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상위권 학생의 경우에는 양(+)이고, 중하위권 학생의 경우에는 음(-)이다. 그러나 이들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다. 광주의 조례가 전북의 조례에 비하여 더 큰 효과를 미친 것으로 추정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그리 높지 않다. 결국 인권조례는 중하위권 학생들의 일부 개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지만, 전체적으로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문제행동 경향에 대한 효과가 일관되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표 8>의 패널 B에 제시되어 있는 문제행동에 대한 피해 경험은 인권조례가 학생들,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할 때, 광주의 인권조례 시행 이후 임의의 학생이 집단 따돌림을 당할 확률이 1.94%포인트(예를 들어, 1.7%에서 3.4%로), 그리고 폭행을 당할 확률이 2.48%포인트(예를 들어, 1.5%에서 4.0%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피해 확률의 증가는 주로 하위권 학생들에게 보다 확연하게 나타난다. 인권조례 시행 이후 광주의 하위권 학생들이 놀림/조롱, 집단 따돌림, 폭행을 경험할 확률은 각각 6.0, 3.7, 2.2%포인트 정도 증가하였다. 전북 조례의 경우에도, 조례 시행 이후 중위권 학생들이 놀림/조롱, 협박을 경험할 확률은 각각 4.4, 1.3%포인트 정도,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이 협박을 경험할 확률이 0.8%포인트 정도 증가하였다.

인권조례 시행에 따라 중위권 학생이 6가지 문제행동 중 적어도 한 가지부터 피해를 당할 확률이 약 6.2%포인트 증가하고,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다. 하위권 학생에 대한 추정치도 6.0%포인트로서 비슷한 크기이다. 즉 인권조례는 중하위권 학생들이 문제행동으로부터 피해를 당할 확률을 어느 정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표 7>의 추정결과는 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체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표 8>의 추정결과는 인권조례가 학생들, 특별히 중하위권 학생들의 문제행동 빈도와 문제행동 피해 경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학생들이 문제행동을 하는 정도 자체가 변화했다는 증거가 약한 반면, 문제행동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유의하게 증가한 점으로부터 우리는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행동에 대해 정확히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본 분석의 결과는 학생들이 문제행동의 피해를 당한 경험의 변화만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제행동의 유발이 없이는 그 피해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본 논문의 결과를 문제행동 유발 경향의 변화의 관점에서 약간 확대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분석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교 내 그리고 학급 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중하위권 학생들의 행동에 일정한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관대한 교육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생들의 문제행동 유발을 제어하는 기능이 다소 약화되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VI. 강건성 검토

1. 오류확인 실험(falsification tests)

앞의 장에서 도출한 인권조례 효과의 추정치들이 진정한 인과효과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우리는 본 절에서 인권조례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측되는 변수들에 대해 위와 동일한 분석을 진행한다. 앞 장에서 구한 추정치들이 인과효과 추정치라면, 인권조례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되는 종속변수들에 대해서만 유의한 효과가 관측되고, 그렇지 않은 변수들에 대해서는 유의한 효과가 관측되지 않아야 한다.

오류확인 실험을 위한 종속변수로서 우리는 학생의 신장, 체중, 형제자매 수를 사용한다. 학생의 형제자매 수는 대체로 인권조례의 시행 이전에 결정되는 변수이므로, 인권조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변수이다. 그리고 학생의 신장이나 체중은 이론적으로는 조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추측되는 변수들이다. 만약 조례가 이들 변수에 통계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면, 앞의 장에서 도출한 이중차분 추정치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표 9>에는 위에서 설명한 오류확인 실험의 추정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에 따르면, 학생의 신장, 체중 그리고 형제자매 수는 예상과 같이 인권조례로부터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설명변수로서 모친의 근로 여부와 로그 가구소득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는 제V장에 제시한 추정치들이 인권조례의 인과효과에 가까운 추정치임을 시사한다.

〈표 9〉 조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종속변수들에 대한 분석결과

| | 전체 표본 | | 상위 33% | | 중위 33% | | 하위 33% | |
|----------------------|-------------------|------------------|------------------|-------------------|-------------------|------------------|-------------------|------------------|
| | (1) 광주 | (2) 전북 | (3) 광주 | (4) 전북 | (5) 광주 | (6) 전북 | (7) 광주 | (8) 전북 |
| 패널 1. 기본모형 | | | | | | | | |
| 형제자매수 | 0.008 [0.036] | 0.005 [0.020] | 0.042 [0.049] | -0.013 [0.016] | -0.051 [0.072] | 0.003 [0.027] | 0.022 [0.066] | 0.022 [0.046] |
| 관측치 수 | 6,130 | | 1,960 | | 1,988 | | 2,094 | |
| 학생의 수 | 1,711 | | 537 | | 547 | | 578 | |
| 신장(cm) | -0.240 [0.490] | 0.081 [0.381] | 0.310 [0.860] | -0.180 [0.660] | -0.640 [0.680] | 0.360 [0.600] | -0.450 [0.910] | 0.032 [0.700] |
| 체중(kg) | 0.958 [0.718] | 0.457 [0.748] | 0.740 [0.970] | -0.230 [1.040] | 0.260 [1.420] | 1.260 [0.930] | 1.750 [1.350] | 0.290 [1.770] |
| 관측치 수 | 4,853 | | 1,856 | | 1,852 | | 1,832 | |
| 학생의 수 | 1,685 | | 526 | | 521 | | 528 | |
| 패널 2. 통제변수 추가 | | | | | | | | |
| 형제자매수 | 0.011 [0.040] | 0.014 [0.020] | 0.054 [0.057] | 0.000 [0.010] | -0.058 [0.077] | 0.001 [0.029] | 0.026 [0.073] | 0.040 [0.049] |
| 관측치 수 | 5,629 | | 1,960 | | 1,988 | | 2,094 | |
| 학생의 수 | 1,619 | | 537 | | 547 | | 578 | |
| 신장(cm) | -0.196 [0.515] | 0.221 [0.423] | 0.150 [0.890] | -0.320 [0.730] | -0.370 [0.730] | 0.460 [0.640] | -0.330 [0.950] | 0.370 [0.800] |
| 체중(kg) | 0.912 [0.775] | 0.766 [0.817] | 0.650 [1.030] | -0.610 [1.110] | 0.190 [1.560] | 1.390 [0.950] | 1.870 [1.430] | 1.350 [2.130] |
| 관측치 수 | 4,417 | | 1,482 | | 1,460 | | 1,437 | |
| 학생의 수 | 1,579 | | 519 | | 523 | | 517 | |

주: 괄호 안은 군집을 고려한 표준오차(군집의 기준은 학교 ID). 추정모형에는 연도 고정효과와 개인 고정효과가 포함되어 있음. ** p<0.05, * p<0.1.

2.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분석

제V장에서 우리는 인권조례 자체 그리고 체벌금지 조항의 시행 시점이 불분명한 지역인 서울과 경기를 통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절에서는 서울과 경기를 포함하는 경우의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이 분석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제V장에서 도출한 인권조례 효과 추정치들의 강건성을 간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제IV장에서 설명했듯이, 경기도의 경우 인권조례의 처치 시점과 설문조사 시점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본 절에서 우리는 경기도에 대한 2010년 설문조사 결과가 인권조례 시행 이전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가정한다. 설문조사가 조례 시행 이후 시점에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문조사가 2010년 10월 중 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2010년을 처치 이전 시점으로 설정하는 것은 조례의 실제 효과를 추정하는 데 큰 편의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반면, 설문조사가 조례 시행 이후 시점에 이루어졌고, 조례 시행 직후에 발생한 변화들이 그대로 설문결과에 반영되었다면, 본 절의 결과는 인권조례의 실제 효과를 과소 추정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인권조례가 시행된 처치 시점을 2012년으로 설정하고, 2010년과 2011년을 처치 이전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서울시의 인권조례가 시행된 시점과 체벌금지가 적용된 시점 사이에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시를 분석에 포함하는 경우에 인권조례 효과의 추정치는 실제 효과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결국 경기도와 서울을 분석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처치 시점에 대한 측정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권조례의 진정한 효과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과 경기도를 분석 표본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분석결과는 <표 10>에 정리되어 있다. (1)~(5)열의 결과는 학생의 성적 수준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표본을 사용한 경우의 추정치들이다. 성적 수준이 상위권인 학생들에 대한 추정결과는 (6)~(10)열에, 중위권 학생들에 대한 결과는 (11)~(15)열에, 하위권 학생들에 대한 추정결과는 (16)~(20)열에 제시되어 있다. <표 7>과 <표 8>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인권조례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행동 유형, 교우 및 교사관계, 그리고 본인의 문제행동 경향에는 대체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서울과 경기도를 분석 표본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경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점을 고려하여 <표 10>에서는 모든 변수에 대해서가 아니라, 조례 효과의 추정치가 10% 수준에서 대체로 유의한 변수들만을 대상으로 추정 결과를 요약한다. 즉, <표 10>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변수들에 대한 효과의 추정치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표 10>의 패널 A의 결과에 따르면,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할 때 인권조례는 학생들의 문제행동 경향에 대체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복도 정숙 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광주와 서울의 조례는 학생들(주로 하위권 학생들)의 복도 정숙 행동을 감소시키고, 전북의 조례는 그것(주로 중위권 학생들)을 증가시킨다.

〈표 10〉 인권조례 효과의 강건성 검정: 서울, 경기 표본 포함

| | 전체 표본 | | | | | 상위 33% | | | | |
|---------------|---------------------|---------------------|--------------------|--------------------|---------------------|-------------------|--------------------|--------------------|-------------------|-------------------|
| | (1) 조례 | (2) 광주조례 | (3) 전북조례 | (4) 서울조례 | (5) 경기조례 | (6) 조례 | (7) 광주조례 | (8) 전북조례 | (9) 서울조례 | (10) 경기조례 |
| A. 바람직한 행동: | | | | | | | | | | |
| 숙제 수행 | 0.008 [0.021] | -0.065 [0.050] | 0.067 [0.060] | 0.023 [0.032] | 0.002 [0.032] | 0.008 [0.029] | -0.069 [0.069] | 0.140* [0.079] | 0.036 [0.042] | -0.036 [0.046] |
| 복도 정숙 | -0.003 [0.023] | -0.120** [0.056] | 0.120** [0.055] | -0.074* [0.038] | 0.055 [0.036] | -0.029 [0.039] | -0.031 [0.093] | 0.012 [0.110] | -0.082 [0.057] | 0.011 [0.063] |
| 쓰레기 처리 | -0.023 [0.021] | -0.078 [0.051] | 0.066 [0.052] | -0.056* [0.031] | -0.009 [0.034] | -0.003 [0.035] | -0.011 [0.072] | -0.032 [0.095] | -0.049 [0.048] | 0.058 [0.055] |
| B. 교사/교우관계: | | | | | | | | | | |
| 반갑게 인사 | -0.037** [0.017] | -0.072** [0.036] | -0.000 [0.044] | -0.019 [0.025] | -0.053* [0.027] | -0.036 [0.027] | -0.059 [0.055] | -0.070 [0.056] | -0.011 [0.039] | -0.041 [0.048] |
| 교사 친절 | -0.031 [0.019] | -0.037 [0.035] | 0.034 [0.049] | -0.007 [0.030] | -0.072** [0.030] | -0.036 [0.029] | 0.009 [0.056] | -0.033 [0.082] | -0.022 [0.039] | -0.069 [0.051] |
| C. 삶의 만족도: | | | | | | | | | | |
| 즐거움 | -0.013 [0.024] | -0.074 [0.053] | -0.029 [0.053] | -0.028 [0.041] | 0.019 [0.036] | -0.012 [0.038] | -0.110* [0.064] | -0.170* [0.091] | 0.046 [0.056] | 0.035 [0.059] |
| D. 피해 경험: | | | | | | | | | | |
| 놀림/조롱 | 0.014 [0.015] | 0.026 [0.022] | 0.025 [0.022] | 0.002 [0.023] | - [0.023] | 0.002 [0.022] | -0.009 [0.049] | 0.015 [0.047] | 0.000 [0.023] | - [0.023] |
| 왕따 | 0.003 [0.010] | 0.018*** [0.005] | -0.001 [0.017] | -0.002 [0.016] | - [0.016] | -0.009 [0.013] | 0.005 [0.006] | -0.023 [0.037] | -0.008 [0.017] | - [0.017] |
| 폭행 | 0.004 [0.008] | 0.024** [0.011] | -0.011 [0.018] | 0.0041 [0.010] | - [0.010] | 0.000 [0.010] | 0.019 [0.020] | 0.006 [0.004] | -0.010 [0.016] | - [0.016] |
| 협박 | 0.001 [0.008] | 0.001 [0.021] | 0.006 [0.006] | -0.002 [0.011] | - [0.011] | -0.002 [0.008] | 0.002 [0.005] | 0.007** [0.003] | -0.007 [0.013] | - [0.013] |
| 성희롱 | -0.000 [0.006] | 0.012 [0.010] | 0.003 [0.002] | -0.007 [0.010] | - [0.010] | 0.001 [0.002] | 0.001 [0.002] | 0.002 [0.002] | 0.001 [0.002] | - [0.002] |
| 문제행동 피해 여부 | 0.029 [0.019] | 0.043 [0.034] | 0.032 [0.026] | 0.021 [0.029] | - [0.029] | 0.002 [0.027] | -0.023 [0.058] | 0.012 [0.047] | 0.008 [0.033] | - [0.033] |
| 관측치 수 | | | 8,663 | | | | | 2,828 | | |
| 학생의 수 | | | 2,270 | | | | | 727 | | |

<표 10>의 계속

| | 중위 33% | | | | | 하위 33% | | | | |
|---------------|---------------------|---------------------|--------------------|---------------------|---------------------|-------------------|---------------------|--------------------|--------------------|-------------------|
| | (11) 조례 | (12) 광주조례 | (13) 전북조례 | (14) 서울조례 | (15) 경기조례 | (16) 조례 | (17) 광주조례 | (18) 전북조례 | (19) 서울조례 | (20) 경기조례 |
| A. 바람직한 행동: | | | | | | | | | | |
| 숙제 수행 | 0.050 [0.037] | 0.076 [0.099] | 0.037 [0.100] | 0.036 [0.060] | 0.059 [0.054] | -0.035 [0.043] | -0.170* [0.089] | 0.030 [0.120] | -0.011 [0.069] | -0.021 [0.063] |
| 복도 정숙 | 0.036 [0.042] | -0.130 [0.097] | 0.210** [0.084] | -0.019 [0.072] | 0.070 [0.066] | -0.001 [0.041] | -0.200** [0.100] | 0.120 [0.092] | -0.120* [0.067] | 0.098* [0.059] |
| 쓰레기 처리 | -0.064* [0.036] | -0.029 [0.100] | 0.045 [0.085] | -0.094** [0.047] | -0.091 [0.061] | -0.007 [0.041] | -0.170* [0.092] | 0.190** [0.084] | -0.030 [0.072] | 0.001 [0.059] |
| B. 교사/교우관계: | | | | | | | | | | |
| 반갑게 인사 | -0.062** [0.029] | -0.140** [0.065] | 0.047 [0.078] | -0.044 [0.041] | -0.100** [0.045] | -0.005 [0.034] | -0.024 [0.067] | 0.017 [0.088] | 0.008 [0.054] | -0.012 [0.051] |
| 교사 친절 | -0.025 [0.033] | -0.001 [0.068] | 0.170** [0.069] | -0.019 [0.051] | -0.120** [0.053] | -0.019 [0.038] | -0.110* [0.058] | -0.058 [0.095] | 0.061 [0.076] | -0.018 [0.054] |
| C. 삶의 만족도: | | | | | | | | | | |
| 즐거움 | -0.008 [0.044] | -0.062 [0.120] | 0.060 [0.093] | -0.120* [0.071] | 0.056 [0.061] | -0.011 [0.046] | -0.044 [0.098] | 0.010 [0.080] | -0.014 [0.092] | -0.009 [0.066] |
| D. 피해 경험: | | | | | | | | | | |
| 놀림/조롱 | 0.015 [0.027] | 0.029 [0.028] | 0.037* [0.020] | -0.003 [0.047] | - | 0.026 [0.028] | 0.060** [0.024] | 0.021 [0.044] | 0.008 [0.053] | - |
| 왕따 | -0.005 [0.019] | 0.010 [0.009] | 0.003 [0.017] | -0.015 [0.034] | - | 0.020 [0.017] | 0.037*** [0.011] | 0.014 [0.031] | 0.014 [0.029] | - |
| 폭행 | 0.019** [0.009] | 0.032 [0.026] | 0.012** [0.006] | 0.018 [0.011] | - | -0.012 [0.022] | 0.021** [0.009] | -0.053 [0.051] | -0.001 [0.028] | - |
| 협박 | 0.005 [0.014] | -0.016 [0.039] | 0.011** [0.005] | 0.008 [0.021] | - | -0.004 [0.020] | 0.009 [0.053] | -0.001 [0.018] | -0.015 [0.029] | - |
| 성희롱 | -0.011 [0.014] | 0.020 [0.025] | 0.002 [0.005] | -0.029 [0.025] | - | 0.012 [0.009] | 0.019 [0.021] | 0.006 [0.004] | 0.012 [0.014] | - |
| 문제행동 피해 여부 | 0.026 [0.034] | 0.057 [0.055] | 0.052** [0.026] | 0.000 [0.057] | - | 0.054 [0.038] | 0.094 [0.058] | 0.029 [0.058] | 0.048 [0.063] | - |
| 관측치 수 | 2,806 | | | | | 2,873 | | | | |
| 학생의 수 | 721 | | | | | 743 | | | | |

주: 괄호 안은 군집을 고려한 표준오차(군집의 기준은 학교 ID). 추정모형에는 연도 고정효과와 개인 고정효과가 포함되어 있음. ** p<0.05, * p<0.1

패널 B의 결과에 따르면,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할 때 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교우 및 교사관계에 대체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예외적으로 교사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행동은 유의하게 감소시킨다. 특히 광주 학생들(주로 중위권 학생들)의 교사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행동이 조례 시행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표 8>의 결과와는 다르게 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생들이 '사는 게 즐겁다'고 답할 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변화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12가지 문제 행동의 경우에도 인권조례 시행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변화하지 않았다.

<표 10>의 패널 D의 결과에 따르면, 문제행동에 대한 학생들의 피해 경험은 인권조례 시행 이후에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8>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피해 경험은 주로 중하위권 학생들에게서 관측된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할 때, 광주의 인권조례 시행 이후 임의의 학생이 집단 따돌림을 당할 확률이 1.8%포인트, 그리고 폭행을 당할 확률이 2.4%포인트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 확률의 증가는 주로 하위권 학생들에게서 나타난다. 인권조례 시행 이후 광주의 하위권 학생들이 놀림/조롱, 집단 따돌림, 폭행을 경험할 확률은 각각 6.0, 3.7, 2.1%포인트 정도 증가하였다. 전북 조례의 경우에도, 조례 시행 이후 중위권 학생들이 놀림/조롱, 폭행, 협박을 경험할 확률이 각각 3.7, 1.2, 1.1%포인트 정도,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이 협박을 경험할 확률이 0.7%포인트 정도 증가하였다.

<표 10>에 요약된 추정결과는 대체로 <표 8>에 제시되어 있는 결과들과 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표 8>의 추정치들이 광주와 전북 인권조례의 인과효과를 보여준다는 점을 시사한다.

VII. 결 론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2010년부터 일부 광역시도(경기도, 서울시, 광주시, 전북)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인권조례에 학내 체벌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권조례의 효과 추정은 보다 일반적으로는 관대한 교육방법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모 체벌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연구들이 상당히 방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학내 체벌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매우 희소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이 분야의 연구를 진전시키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인권조례가 2010년 이후 4개 광역시도에 시차를 두고 도입되었다는 점을 활용하는 이중차분법을 적용한다. 본 논문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권조례는 바람직한 행동 경향,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전반적인 만족도로 표현되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인권조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는 몇몇 변수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변수들에 대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는 조례의 영향을 학생의 성적 수준별로 구분하는 경우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반면에, 인권조례는 학생들의 문제행동으로부터의 피해 경험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향은 상위권 학생들에게서보다는 주로 중하위권 학생들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는 인권조례의 시행이 일부 학생들,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의 문제행동 경향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권위적 교육(authoritative teaching)을 다룬 외국의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예측한 바에 대체로 부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권조례의 효과를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문제행동 경향 및 문제행동으로부터의 피해 경험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론적으로 인권조례는 이들 변수 이외에도 다른 많은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관심도가 높은 주제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인권조례가 학생의 성적에 미치는 효과는 다루지 못하였다. 앞으로의 진전된 연구에서는 인권조례의 성적 효과를 추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박정원·이성흠, 「‘체벌’금지에 대한 입법동향과 과제」, 『교육법학연구』 22권 2호 (2010. 12): 79-102.

- 서울특별시교육청.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학생 생활지도 기본계획 (2010. 9).
- 오태열·강재태. 「체벌에 의한 학생 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미시적, 상호작용적 이해를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17권 (2006): 223-249.
- 이종원·황진구·서정아·한영근·허효주·이영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IV 사업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참교육 연구소. 「전국 학생인권 생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3.
- 정희진.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생 행동 변화 추정: 광주 학생인권조례의 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5.
- 조금주. 「2006년도 중·고등학생 인권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청소년학연구』 14권 3호 (2007): 189-216.
- 조석훈·김효정·표시열. 「학생 훈육 수단으로서 체벌에 관한 교사·학생·학부모의 인식 비교와 법적 과제」. 『교육법학연구』 24권 2호 (2012. 8): 67-91.
- Baker, Jean A., Teresa P. Clark, Alicia Crowl and John S. Carlson. "The Influence of Authoritative Teaching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0 (4) (2009): 374-382.
- Babcock, Philip. "The Rational Adolescent: Discipline policies, lawsuits, and skill acquisition."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8 (5) (October 2009): 551-560.
- Ferguson, Christopher J. "Spanking, Corporal Punishment and Negative Long-term Outcomes: A meta-analytic review of longitudinal studi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33 (1) (February 2013): 196-208.
- Gershoff, Elizabeth T. "Corporal Punishment by Parents and Associated Child Behaviors and Experiences: A meta-analytic and theoret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8 (4) (2002): 539-579.
- Gershoff, Elizabeth T. "More Harm Than Good: A Summary of Scientific Research on the Intended and Unintended Effects of Corporal

Punishment on Children.”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73 (2010): 31-56.

Gershoff, Elizabeth T., Kelly M. Purtell and Igor Holas. *Corporal Punishment in U.S. Public Schools: Legal Precedents, Current Practices, and Future Policy*. Springer, 2015.

Larzelere, Robert E. and Brett R. Kuhn. "Comparing Child Outcomes of Physical Punishment and Alternative Disciplinary Tactics: A Meta-Analysi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8 (1) (2005): 1-37.

Paolucci, Elizabeth O. and Claudio Violato. “A Meta-analysis of the Published Research on the Affective, Cognitive, and Behavioral Effects of Corporal Punishment.” *Journal of Psychology* 138 (3) (2004): 197-222.

Steinberg, Laurence, Llana Blatt-Eisengart and Elizabeth Cauffman.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Homes: A Replication in a Sample of Serious Juvenile Offender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6 (1) (2006): 47-58.

abstract

Effects of the Korean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on Student Behavior: Indulgent Teaching and Student Responses

Heejin Jung · Changhui Kang

This paper examines effects of the Korean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on student behavior. The ordinance was put into effect in some municipalities (Seoul, Kyongki, Kwanju, Jonbuk) from 2010. Since the ordinance prohibits corporal punishment and other authoritative treatments of students in school, the paper estimates effects of indulgent teaching on student behaviors. Our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es suggest that the ordinance has little effect on the students' propensity to behave, intimacy with classmates and teachers and overall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In contrast, the ordinance increases the likelihood of students, especially low-performing and mid-performing students suffering from problem behaviors of other students. This implies that some (probably low-performing and mid-performing) students tend to commit more problem behaviors after the ordinance has taken effect.

Keywords: The Korean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teaching methods, difference-in-differences